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617호(號) 1932(昭和 7)년 5월 31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3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2(昭和 7)년 6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5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내지(內地)와 만주(滿洲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「면직물제품(綿織物製品: 편물[編物]· 짝을 맞추어 만든 물건[組物]을 포함[包含]함). 면메리야스감(綿medias地). 면제의류(綿製衣類) 및 부속품(附屬品). 면제시트(綿製seat). 면제모포(綿製毛布: 면[綿]을 주[主]로 한 것을 포함[包含]함). 면제끈[綿製紐]의 항(項), 「피혁(皮革). 피혁제밴드(皮革製band). 가죽제 가방[革製鞆], 지갑[錢入]의 항(項), 「밀감(蜜柑)의 항(項) 및 「청주(淸酒). 탁주(濁酒). 백주(白酒). 미림(味淋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중(中) 각(各) 「우메다(梅田),」를 삭제(削除)하고 기사란(記事欄)을 각 「본(本) 임률(賃率)에는 접속비(接續費)를 포함[包含]함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「종이(紙: 보드지[board紙]를 제[除]함). 가공지(加功紙: 사포지[砂布紙], 벽지[壁紙], 색지[色紙]). 종이제 꼬리표[紙製荷札]. 봉투[封筒]의 항(項) 및 「동(銅). 놋쇠[眞鍮]. 동(銅) 및 놋쇠제품[眞鍮製品]. 금고(金庫). 날붙이류(刃物類: 서양면도칼[西洋剃刀]을 제[除]함)의 항(項)을 삭제(削除)함.